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교통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세심사소위를 거쳐 6월 30일쯤 최종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내용을 게재한다.

의안번호	1869
------	------

제출연월일 : 2005. 5. 26
제 출 자 :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關稅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16조제6호중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 호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

交通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표의 적용기간 및 세율란중 “362원”을 “365원”으로 한다.

제3조제2호·제4조 단서·제7조제3항·제

-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법률 제 7011호 交通稅法中改正法律 부칙(2003. 12. 30) 제3조(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법률 제 7011호 交通稅法中改正法律 부칙(2003. 12. 30) 제3조(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 ----- ----- -----				
		적용기간 및 세율					적용기간 및 세율		
과세 대상	단 위	2004.1.1 ~ 2004.6.30	2004.7.1 ~ 2005.6.30	2005.7.1 ~ 2006.6.30	과세 대상	단 위	2004.1.1 ~ 2004.6.30	2004.7.1 ~ 2005.6.30	2005.7.1 ~ 2006.6.30
제2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리터 당	276원	319원	<u>362원</u>	제2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리터 당	276원	319원	<u>365원</u>